

②체험관 이용권의 규격, 발행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재산 및 물품관리) ①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·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.

②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.

제11조(보험가입)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·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2조(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) ①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매점

2. 기념품점
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②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·운영을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기타 편의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.

제13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체험관 이용료(제8조제2항 관련)

구 분	금 액		비 고
	개 인	단체(10인 이상)	
어 른	700원	550원	19세 ~ 64세
청소년 및 군경	300원	250원	청소년 : 13세 ~ 18세 군 경 : 하사이하 군인, 의무경찰 및 전 투경찰 (의무소방원, 경비교도 포함)
어린이 및 노인	무 료	무 료	12세이하 및 65세이상

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전자심의”라 함은 회의 개최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·수신된 자료로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정보화정책회의)

① 시장은 지역정보화의 원활한 추진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·자치구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업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 의견을 조정·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46 (第140回-第4次)

② 제1항의 정책회의는 당해 정보화 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시 및 자치구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설치)”를 “(설치 및 구성)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”을 “위원장 1인”으로 하며,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이 되고, 위원은 정보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정보화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16조중 “출석한 위원과 전문가”를 “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47
------	-----

2003년 3월
문화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2월 27일, 서울특별시 교육감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5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(2003. 3.17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이기호 기획관리실장)

가. 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학생 수련·교육의 원활한 수행과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(구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소재지)로 이전하고,
-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생활중심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“여학생교육분원”的 명칭을 “생활체험의 집”으로 변경하여 그 소재지를 경기도 가평군(현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 소재지)으로 이전하며,
- 일부 본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본원 소재지를 “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 106번지 1호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 27호”로 변경
-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“여학생교육분원”的 명칭을 “생활체험의 집”으로 변경하고, 그 소재지를 “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45”에서 “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487-1”로 변경
-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일부 분원의 명칭 변경
 - 대성의 집 분원 → 대성의 집
 - 대천임해수련분원 → 대천임해수련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윤병국)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학생 수련·교육의 원활한 수행과 각 지방에